

※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변경지시[의약품심사조정과-1936호, 2017. 03. 24]에 따라, 제품명이 하기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.

	현행 허가사항	변경 허가사항
제품명	히아레인미니점안액0.3% (히알루론산나트륨)	히아레인미니점안액0.3% (히알루론산나트륨)(1회용)